

## 부속서 IV

###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베트남

1. 개별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대하여 표시된 글자와 괄호 안의 숫자는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1991년 7월 10일자 GATT 문서 MTN.GNS/W/120)에 대한 언급이다.
2. 알파벳과 숫자로 된 구분은 구체적 약속의 내용을 나타낼 뿐 그 구체적 약속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경제적 수요심사 및 이 양허표의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노동시장 테스트를 포함하여, 베트남은 자신의 법과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떠한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는 제8.6조(최혜국 대우),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른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b>A. 기업 내 전근자</b> <u>정의:</u> 아래에 정의된 대로, 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 내 전근자로서 그 상업적 주재로 일시 이동하며,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그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b>관리자 및 임원</b> 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그 외국 기업의 경영을 주로 지휘하고, 그 설립체 또는 그 설립체의 부서나 하위부서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여 그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와 동등한 인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으며,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고용 및 해고 또는 고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며, 설립체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임.	기업 내 전근자는 입국 및 최초 3년 간의 체류가 허용되며 이는 베트남에 있는 그러한 실체의 운영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총 수의 최소 20퍼센트는 베트남 국민임. 그러나, 기업당 최소 3인의 비베트남인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가 허용됨.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전문가는 조직 내에서 근무하며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임. 그러한 지식을 평가할 때, 그 상업적 주재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지식 뿐만 아니라 그 인이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나 거래의 유형에 관한 고도의 기술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것임. 전문가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일원을 포함할 수 있음.</p>	
<p><b>B. 그 밖의 인력</b></p>	
<p><u>정의:</u> 베트남인으로 대체될 수 없고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의하여 베트남 영역 외 지역에서 고용된, 상기의 (A)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p>	<p>그 밖의 인력은 입국 및 해당 고용계약 기간에 합치하는 기간 또는 최초 3년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며, 이는 이들과 상업적 주재 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p>
<p><b>C. 서비스 판매인</b></p>	
<p><u>정의:</u> 베트남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베트남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 (i) 그러한 판매가 직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ii) 판매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그 제공자를 대표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인.</p>	<p>서비스 판매인의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p>
<p><b>D. 상업적 주재 설립을 담당하는 인</b></p>	
<p><u>정의:</u> 상기의 (A)에 정의된 법인의 관리자 및 임원으로, (i) 서비스의 직접 판매 또는 공급에 종사하지 않고 (ii)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외의 당사자 영역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에 그 밖의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 베트남에 당사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함.</p>	<p>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하는 인의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p>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함)
<b>E.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b>	
<p><u>정의:</u>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p>	<p>계약 서비스 공급자(CSS)는 90일의 기간 또는 계약 존속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입국 및 체류 허가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p>(i) 그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였음.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계약의 선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권리를 지님.</p> <p>(ii) 이들은 다음을 보유해야 함: (a)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을 입증하는 기술 자격 문서, (b) 베트남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그 전문 자격, 그리고 (c) 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전문적 경험.</p> <p>(iii) 서비스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력의 수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지는 않으며, 이는 베트남의 법, 규정 및 요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p> <p>(iv) 이들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이어야 하며 상기 (A)에 기재된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p>이러한 인의 입국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1, 845, 849)와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에 대하여 허용됨.</p>